




당진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 발의자 서명

- 당진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의원명	서명	비고
서영훈		
최연숙	최연숙	
김봉균		
박명우		
윤명수		
김덕주		
김선호		
조상연	조상연	
한상화	한상화	
김명희		
김명진		
전영욱		
전선아	전선아	
심익수		

당진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1998호

발의연월일: 2025년 11월 일

발의자 : 심의수 의원, 전선아 의원,
조상연 의원, 한상화 의원,
최연숙 의원,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고자 함.

2. 불신임 사유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과 공적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을 제시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명시하여, 의장직의 직무상 고도의 ‘윤리성과 중립성’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사안은 명백히 불신임 요건에 해당됩니다.

2) 구체적 사실 및 위반 내용

① 당진시의회 원내대표(국민의힘) 관련 중립위반 및 품위 훼손

- 국회에만 존재하던 “원내대표” 제도가 2024년부터 법률이 개정되어 시의회, 도의회에서도 원내대표 제도가 도입되었다.
- 2024년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심의수, 김명희 의원이 출마 의사를 표명했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심의수 의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김명희 의원이 투표를 거절했고, 서영훈 의장의 중재로 1년씩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25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심의수가 원내대표를 승계해야 하지만, 김명회 의원이 민주당 의원의 고발 건이 마무리를 위해 원내대표 연임(連任)을 해야 한다고 말함.

○ 전영욱 의원 “욕설과 폭행 시도” 사건 발생

- 2025년 8월 22일 “오전” 티타임 후 “원내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함.
- 심의수가 원내대표 승계하는 것을 김명회·김덕주·전영욱 의원이 인정을 못 한다. 라고 주장.
- 시간 여유가 없어서 본 의회장으로 입장하기 전에 “전영욱 의원” 오후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
- 본회의장 입장 과정에서 전영욱 의원이 참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육두문자(肉頭文字)의 욕설과 마이크·유리컵 등으로 가격하려는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언론매체에 보도.
- 오후에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의장실에 모였으며, 김명회·김덕주·전영욱(3인)은 전화 통화도 했으나 끝내 불참했고, 서영훈·김봉균·전선아·심의수(4인)과 의회사무국장 배석(회의록 작성), 투표 결과 심의수가 원내대표를 맡기로 결정하고 의회사무국에 ‘원내대표 변경 신청서’를 접수.
- 그러나, 서영훈 의장은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원내대표 변경 신청서 접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제2차 사건 발생

- 10월 29일 의회 임시회의 종료 후 김명회 의원 “국민의힘” 회의를 하자고 제안.
- 회의안건 : 김명회 원내대표를 내려놓겠다. 그러므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 하자는 것.
- 심의수 의원은 이미 종결된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 후 퇴장하였음.
- 이유는 “김봉균 의원이 탈당했으므로 투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
- 현재까지 의회사무국에 정식적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으나, 참석했던 의원(서영훈·김명회·전영욱·김덕주) 중의 말에 의하면 “김명회” 의원을 선출했다고 전함.

- 의원들 간의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철저하게 개인들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신의(信義)와 신뢰(信賴)를 버린 4명 의원(서영훈·김명희·전영옥·김덕주), 과연 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 서영훈 의장이 참석하여 결정한 사항을 본인 생각인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부인하는 행태(行態) 보이고 있다.
- 위와 같이 서영훈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의 품위유지 의무와 「지방자치법」 제62조 제2항의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② 당진시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관련 중립위반 및 직권남용

- 윤리위원회 구성을 공평하고 이해충돌 없는 의원 6명(민주당 소속 3, 국민의힘 소속 3)으로 합의하여 결정함.
- 하지만, 서영훈 의장이 합의된 사항을 직권을 이용하여 민주당 의원들에게 “심 의수” 를 위원회서 제외하고 2:2(민주2, 국민의힘2) 다시 구성하자고 제의함.
- 이는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품위 유지 의무’ 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③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서영훈 의장

- 최근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장이 차기 지방선거에 재출마 의사를 언론사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그러나 서영훈 의장은 의장 선거 정견 발표 당시 “의장이 된다면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발언이 아닌, 시민과 동료 의원들 앞에서 한 공적 선언이자 신뢰의 약속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방의회의 품격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정치인의 말은 공적 약속이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책임정치의 기본입니다. 시민들은 선거 공약뿐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의 약속 또한 지켜지는 모습을 원합니다.
- 이 또한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품위 유지 의무’ 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2) 원내대표 부재에 따른 문제점

○ 회의 및 안전 조정에 혼선

- 당진시의회의는 교섭단체(민주당, 국민의힘)가 중심이 되어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하나, 원내대표가 공석이거나 불투명하면 회기 일정, 안전상정, 시정질문 순서 및 합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의사 일정 지연 및 행정 공백이 발생.
- 특히, 의장단과 교섭단체 간 협의회가 중단되면 상임위원회 간 이견 조정이 불가능해져, 회의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

○ 당내 리더십 공백과 분열

- 당진시의회의는 정당별 의원 수가 근소하여, 원내대표의 조정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원내대표 부재시, 당내 의견 통일이 안 되어 발언권 · 표결 방향이 불분명해지고 의원 간 불신이 커져 ‘개별 행동’ 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정당 단위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정치적 리더십이 붕괴.

○ 교섭단체 간 협상력 상실

- 의회 운영의 절반은 협상입니다. 원내대표가 없으면 의장단 회의 참여가 불가하거나 비공식 대리인 체제로 운영.
- 상대 교섭단체(타당 원내대표)와의 합의가 어렵고 의정활동 주도권을 상대 정당에 내주는 결과.
- 결국 당내 · 당외 정치적 입지가 약화
-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원내 대표제의 시작도 못 해보는 상황임

3) 결론 및 요청사항

○ 결론

- 지방의회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조정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자리다.

따라서 의장은 단순히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방향을 결정 짓는 신뢰의 중심에 서 있는 막중한 인물이다. 그만큼 모든 발언과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 한 번의 결정은 개인의 생각을 넘어 공동체의 의지를 대표하는 행위가 된다.

- 그런데 본인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논의와 표결을 거쳐 확정된 사안을, 뒤늦게 번복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기본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회의록까지 작성되어 공식 절차를 마친 결정은 의회의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고 있다.
- 이를 개인적 판단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한다면, 의회의 권위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 의장은 때로는 불편한 결정도 감수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균형을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결된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의장의 책무이다.
- 자신이 직접 주재하고 심의한 회의 결과를 뒤집는다면, 이는 곧 ‘회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공공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정치는 신뢰로 세워지고, 신뢰는 약속을 지킬 때 유지된다.**
의장이 스스로의 결정과 절차를 부정하는 순간, 시민은 의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 의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권위가 아니다. 일관된 원칙,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다.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는 지도자는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
- 의장은 언제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시민 앞에서 평가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번복이 아닌, 책임 있는 실천에서 나온다.
- 공정(公正)과 신뢰(信賴)를 지키는 의장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고, 의회의 품격을 세울 수 있다.

○ 요청사항

-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며, 지방의회의 명예 회복과 정상적 운영을 위한 불신임 의결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

-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 2. 시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실천한다.
- 4.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 5.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8.14.>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대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행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8.14.>
6. 심의 대상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행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행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